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6

발의연월일: 2021. 1. 19.

발 의 자:정운천・김은혜・정동만

백종헌 • 이철규 • 김영식

이종성 · 김희국 · 구자근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도 속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연관성이 적은 운영본부에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위탁하지 않고 있어, 운영본부는 동일한 재단 내의 다른 부서와 달리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0조).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9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를 "정부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의 설립) ① (생 략)	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②
을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u>정부가</u>
<u>이</u>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